

중국의 기록물 공개 및 서비스 현황

The Present Condition of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in China

윤 미 경(Mi-Kyung Youn)*

목 차

- | | |
|------------------------------|----------------------|
| 1. 서 론 | 2.3 중국의 기록물 서비스 제도 |
| 2.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제도 | 3. 중국의 기록물 웹서비스 현황 |
| 2.1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제도
건립 | 3.1 중국의 기록물 웹서비스 현황 |
| 2.2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공표 제도 | 3.2 북경시기록관의 기록물 웹서비스 |
| | 4. 결 론 |

<초 록>

본 문은 중국의 기록물 공개 및 서비스에 관한 제도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 제도의 고찰을 위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 반포된 각종 법규의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중국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건설 현황 및 북경시기록관 사이트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중국의 기록물공개, 중국의 기록물서비스, 중국의 기록물 웹서비스

<ABSTRACT>

In this study, system of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and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have been reviewed. Throughout laws and regulations of archives management since fou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lated to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are analyzed. This paper also 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 of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and web service of Beijing archives.

Keywords: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in China,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in China,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 중국인민대학 당안관리학 박사(yk2mk@hanmail.net)

■ 접수일자 2008년 11월 20일 ■ 수정일자 2008년 12월 11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22일

1. 서론

기록의 이용과 보관은 기록물관리에 있어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다. 기록물의 이용은 기록물관리 업무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경로이다. 또한 기록물은 이용을 통하여 그것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기록물 보존의 의미를 한층 신장시킨다.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는 전체 기록물관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기록물관리제도 건설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기록물의 이용은 기록물의 공개, 공표와 서비스 등의 제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는 기록관의 폐쇄성을 변화시키고, 사회 대중들에게 기록물과 기록물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록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18세기 말 프랑스가 대혁명 이후 현대적 의미의 기록관을 건립하고 시민들에게 기록물에 대한 공개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 기록물관리기관이 소유한 기록물과 기록물정보에 대하여 공개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또한 기록물에 대해 공개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1987년 『중국인민공화국당안법(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 - 이하에서는 당안법이라 칭함-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기록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은 중국의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2007년 1월 반포되고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공공정보공개조례(中華人民共和國政府信息公開條例)』에 의해 진행된다. 이 조례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

스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는 여전히 『당안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실시관법(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實施辦法)』 - 이하에서는 당안법실시관법이라 칭함-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천은 중국의 기록물관리업무 원칙인 “統一指導 分級管理”에 의거하여 국가와 중앙기록물행정관리부문이 전국의 기록물관리사업을 주관하며 전국의 기록물사업에 대하여 기획, 조직, 조정하여 제도를 통일하고, 각급 지방 기록물행정부문이 각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업무의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즉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가 국가와 중앙 기록물행정관리부문인 <국가당안국>에 의해 정해진 큰 틀 안에서 각 기록물관리기관인 기록관 단위로 실시된다. 『당안법』이 각급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 기한, 공개 범위, 공개 대상 등의 큰 원칙을 규정하고, 각급 기록관은 각 기록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방시간, 기록물의 제공 방법, 이용자 신분의 확인 등 기타 실천 사항을 정하여 대중과 기관들에게 기록물을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본 문은 중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도의 고찰과 20세기 후반부터 실시되고 있는 중국의 기록물정보사이트의 건설과 북경시기기록관의 기록물 웹서비스 현황을 예로들어 중국의 온라인을 통한 기록물의 웹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제도

2.1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제도 건립

중국에서는 기록물공개를 “당안개방(檔案開放)”이라고 부른다. 당안개방의 의미는 기록물 관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서 일정 기한이 지난 기록물의 통제를 해제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물의 공개는 기록물 서비스의 필수조건이며 전제 조건이 된다.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에서 1980년 이전까지, 1980년부터 『당안법』이 실시되기 이전인 1987년까지, 1988년 당안법 실시에서 현재까지의 3단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갖는다.

첫 번째 단계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에서 1980년 이전까지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는 이용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공산당과 기관의 업무종사자에게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각급 국가기록관은 20세기의 5,60년대에 건립되었다. 건립 초기의 각급 기록관에는 사회에 대한 기록물공개 및 서비스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기록물의 이용 제공 범위는 주로 당과 각급 기관의 내부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60년 3월 중국의 <국가당안국>이 반포한 『성급당안관업무 집행통칙(省檔案館工作暫行通則)』과 『현급당안관업무 집행통칙(縣檔案館工作暫行通則)』에 “당안¹⁾ 이용자는 반드시 기관의 소개

서가 있어야 하며, 이용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대상자를 제한하는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는 1961년 12월에 중국의 <국가당안국>이 반포한 『기관당안실공작 통칙(機關檔案室工作通則)』에도 볼 수 있다. “당안관리인원은 반드시 기관의 역사와 보관하고 있는 당안을 숙지하여 기관의 업무를 이해하고, 당안과 자료를 기관의 지도자와 업무에 서비스해야한다”라고 규정하여 기록물과 자료의 공개와 서비스 대상을 기관의 지도자와 기관 내부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1949-1979년 반포된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은 <표 1>과 같다.

두 번째 단계인 1980년에서 1988년의 『당안법』 실시 이전까지의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는 198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표방하며 사회, 정치 등 각 방면에 변화가 오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학계의 역사기록물의 공개 요구가 기록물에 대한 대외 공개의 물길을 열었다. 1980년 개혁 개방의 사회적 분위기와 학술계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 정부와 공산당중앙은 학술계에 1947년 이전에 형성된 당안(당안전문용어로 역사당안이라 이른다)을 공개하였다(王改嬌 2005).

1980년 <국가당안국>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반포한 『역사당안의 개방에 대한 몇 가지 의견(關於開放歷史檔案的幾點意見)』에서 또한 “첫째 1949년 이전에 생산된 역사당안 즉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구 정권의 당안은 소수의 제한을 필요로 하는 것 이외에는 전국의 사학계와 관련기관에 공개한다. 둘째 1949년

1) 당안은 기록물에 해당하며, 본문 중 인용한 문장에서는 당안을 기록물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함.

〈표 1〉 1949-1979년 반포된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

	반포일시	한 국 어 명 칭 중 국 어 명 칭	비고
1	1958-09-20	중공중앙관공청비서국, 국가당안국의 농촌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결합한 선전교육활동의 전개에 당안자료 이용업무에 관한 통지 中共中央辦公廳秘書局、國家檔案局關於結合農村社會主義和共產主義宣傳教育運動大力開展檔案資料利用工作的通知	실효
2	1959-11-09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 국가당안국의 적과 괴뢰정권 정치당안의 정리, 보관과 이용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中華人民共和國公安部、國家檔案局關於敵偽政治檔案的整理、保管和利用問題的几項規定	실효 ²⁾
3	1960-07-02	중공중앙관공청의 중앙역사당안 사용에 관한 규정 中共中央辦公廳關於使用中央歷史檔案的規定	실효
4	1961-03-18	혁명역사문건 및 자료의 보관과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의견 關於對革命歷史文件、資料保管與使用的几点意見	실효
5	1966-03-05	혁명역사문건 및 자료의 보관과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의견 關於對革命歷史文件資料保管與使用的几点意見	
6	1959-06-03	당안업무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당안자료의 이용업무를 적극 전개하여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서비스한다. 進一步提高檔案工作水平, 積極開展檔案資料的利用工作, 為社會主義事業服務	
7	1963-07-16	국가당안국의 각급당안부문의 업무를 강화하여 목전의 사회주의교육 운동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통지 國家檔案局關於各級檔案部門加強工作為當前社會主義教育運動服務的通知	실효
8	1965-03-02	국가당안국의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당안이용실태 철저조사 통지 國家檔案局關於認真檢查檔案館提供檔案利用情況的通知	

이전에 형성된 당의 혁명역사당안은 반드시 이용을 제한해야 할 특정부분을 제외하고 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에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역시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 대상을 사학계나 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 등으로 이용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를 제한하였다.

198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 대상이 일반(개인)에게 까지 확대되었다. 1982년 11월에 반포한 『역사당안 개방문제에 관한 보고(關於開放歷史檔案問題

的報告)』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모든 역사당안 중 당과 국가의 기밀에 관한 내용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모두 국내의 당정기관, 부대, 단체, 기업과 사업단위, 과학연구 부문에 개방한다. 각급 당안관은 그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외국의 학자와 유학생에 대한 중국의 역사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 학자와 유학생이 중국의 역사당안에 대하여 학술 연구를 하는 상황에서는 관련 부문이 국제

2) 1981년 반포된 『關於旧政權檔案集中保管的請示』의通知로 대체됨.

적인 문화, 학술 교류의 전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상호평등 원칙과 국내외 구별의 원칙을 가지고 확대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883년 4월 중공중앙관공청과 국무원관공청이 반포한 『기관당안공작조례(機關檔案工作條例)』에 “기관기록부문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은 현행기록물로 주로 본 기관과 상급 기관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공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급 주관 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시기에도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생산한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는 여전히 당과 기록물 생산기관 혹은 상급 기관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생산기관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1949년 이후

에 생산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관 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했다.

비록 역사당안에 제한된 공개와 서비스이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각 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의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1949년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제외한 역사기록물에 대한 대외적인 공개와 서비스는 이용자의 범위가 이미 개인과 외국인까지 확대되었다. 단 구체적인 실행 세칙은 1986년에 『당안관 건설과 역사당안의 개방 강화에 대한 보고(關於加強檔案館建設和進一步開放歷史檔案的報告)』로 반포되었고 『외국조직과 개인이 우리나라 당안 이용 시행 판법』이 1991년에 반포되었다. 1980-1987년 반포된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은 <표 2>와 같다.

<표 2> 1980-1987년 반포된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

	반포일시	한국어 명칭 중국어 명칭	비고
1	1980-03-17	역사당안개방에 대한 몇 가지 의견 關於開放歷史檔案的幾點意見	실효 ³⁾
2	1982-11-20	역사당안개방 문제에 관한 보고 關於開放歷史檔案問題的報告	
3	1983-10-06	전국역사당안 정리 출판 계획 좌담회 요지 全國歷史檔案整理出版規劃座談會紀要	
4	1986-02-07	『각급국가당안관의 당안수집범위 규정』과 『당안관의 당안개방 임시집행방법』 통지 『各級國家檔案館收集檔案範圍的規定』與『檔案館開放檔案暫行辦法』的通知	
5	1986-02-16	국가당안국 각급당안기관의 당안제공이 당사자료 수집, 편사수지 등을 위해 복무하는 몇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國家檔案局關於各級檔案部門在提供檔案爲黨史資料征集、編史修志等服務工作中幾個問題的通知	실효 ⁴⁾
6	1986-09-11	당안건설의 강화와 역사당안개방의 진일보에 관한 보고 통지 『關於加強檔案館建設和進一步開放歷史檔案的報告』的通知	
7	1987-10-05	국가당안국, 국가물가국의 당안 이용료 관련규정에 관한 통지 國家檔案局、國家物價局關於利用檔案收費有關規定的通知	

3) 1982년 국가당안국이 반포한 『역사당안개방 문제에 관한 보고』로 대체됨.

세 번째 단계인 1988년 『당안법』 실시 이후 현재까지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는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87년 9월 전인대상무위에서 제정하고 1988년부터 실시된 『당안법』은 현재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관한 유일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1990년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1990년 11월 19일에 국가당안국령으로 반포되었으며 1999년 5월에 수정되었다. 『당안법』과 『당안법실시관법』은 중국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의 민주화를 실현하였다. 『당안법』과 『당안법실시관법』에는 “국가당안관⁴⁾이 보관하고 있는 당안은 일반적으로 형성된 후 30년이 지나면 반드시 사회에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당안법실시관법』에도 기록물의 종류에 따른 공개 시기, 이용자에 따른 공개와 서비스 방법, 기록물의 공개 철차와 비밀 해제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실천의 기반을 다졌다. 『당안법』과 『당안법실시관법』이 실시된 이후 1992년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各級國家檔案館開放檔案辦法)』이 실시되었고, 1987년 『당안 이용 수수료 관련 규정(關於利用檔案收費有關規定)』, 1991년 『외국조직과 개인이 우리나라 당안 이용 시행관법(外國組織和個人利用我國檔案試行辦法)』 등이 제정되어 기록물 이용 수수료, 이용자의 범위, 기록물의 공개,

공표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충실하게 하였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반포된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은 <표 3>과 같다.

1949년 이후 반포된 중국의 각급 국가기록관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모두 30개⁶⁾로 1987년에 제정된 『당안법』과 『당안법실시관법』을 기본법규로 삼고 있다. 각 규정은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으며,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의 대상 및 기록물의 범위 확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제도는 이용자의 제한, 기록물의 부분적 공개, 이용자에 대한 차별 공개에서 개방적이고 전체적이며 평등한 방향으로 제도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

2.2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공표 제도

기록물의 공개와 공표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기록물 이용자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의 전제이며 기록물 서비스의 필수 조건이다. 기록물은 공개와 공표를 통하여 사회 대중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기록물의 공개는 기록물의 이용 가능성 여부에 무게중심을 둔 제도이고 기록물의 공표는 일정한 방법을 통하여 모종의 기록물을 처음으로 사회에 알리어 대중으로 하여금 기록물을 이해하고 기록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다.

2.2.1 중국의 기록물 공개제도

현행 중국의 기록물 공개는 『당안법』과 『당

4) 1991년 12월 26일 반포된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으로 대체됨.

5) 당안관은 기록관에 해당함, 본문 중 인용한 문장에서는 기록관으로 번역하지 않고 당안관을 그대로 인용함.

6) 과학기술기록물과 부문당안관, 전문당안관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제외된 수량임.

〈표 3〉 1988-현재까지 반포된 중국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 정책

	반포일시	한 국 어 명 칭 중 국 어 명 칭	비고
1	1988-02-12	국가당안국의 당안 이용료 관련규정에 관한 통지의 보충설명 國家檔案局關於利用檔案收費有關規定的通知的補充說明	
2	1988-04-20	국가당안국의 비밀전보 개방 문제에 관한 통지 國家檔案局關於密碼電報開放問題的通知	
3	1988-08-11	국가당안국의 「전국의 일부 성 이상 당안관의 당안개방 및 기초작업 가속을 위한 좌담회 요지」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國家檔案局關於印發「全國部分省以上檔案館檔案開放及加快基礎工作座談會紀要」的通知	
4	1989-07-14	국가당안국의 공안, 검찰, 법무기관이 사건처리를 위한 당안 열람시 무료서비스 실시에 관한 통지 國家檔案局關於為公、檢、法部門辦案調閱檔案實行無償服務的通知	
5	1988-10-26	「과학기술당안 정보자원의 개발이용 임시 집행방법」의 통지 「開發利用科學技術檔案信息資源暫行辦法」的通知	
6	1989-10-30	국가당안국의 당안출판물과 출판업무 정돈현황 보고에 관한 통지 國家檔案局關於報送整頓檔案書刊和出版工作情況的通知	
7	1990-02-14	「당안업무 국가비밀 및 비밀등급의 구체적 범위규정」의 통지 「檔案工作中國家秘密及密級具體範圍的規定」的通知	
8	1991-09-27	「각급 국가당안관 수장당안의 비밀해제와 사용범위 구분통제 임시집행 규정」의 통지 「各級國家檔案館館藏檔案解密和劃分控制使用範圍的暫行規定」的通知	
9	1991-12-26	「각급 국가당안관 당안개방관법」과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의 우리나라 당안 이용에 관한 시행관법」 관련 주의사항 통지 「各級國家檔案館開放檔案辦法」和「外國組織和個人利用我國檔案試行辦法」有關注意事項的通知	
10	1991-12-26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 「各級國家檔案館開放檔案辦法」	
11	1991-12-26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의 우리나라 당안 이용에 관한 시행관법」 「外國組織和個人利用我國檔案試行辦法」	
12	1992-04-22	「중앙이 관리하는 당안계통의 행정사무성 이용 수수료 항목 및 표준발포에 관해」통지(「당안 이용료 규정」과 「과학기술당안 정보자원 이용료 규정」 포함) 「關於發布中央管理的檔案系統行政事業性收費項目及標準」的通知 (含「利用檔案收費規定」和「利用科學技術檔案信息資源收費的規定」)	
13	1991-12-14	국가당안국의 중앙업무회의의 정신을 실현하고, 당안부문이 국영 중, 대형기업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國家檔案局關於落實中央工作會議精神，檔案部門要為搞好國營大中型企業服務的 通知	
14	1994-08-17	「과학기술당안 개발이용의 경제효과 계산방법 규정」(시행)의 통지 「開發利用科技檔案所創經濟效益計算方法的規定」(試行)的通知	
15	2004-12-29	당안 정보자원의 개발이용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關於加強檔案信息資源開發利用工作的意見	

안법실시관법』 및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법규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기록물 공개에 대한 기록물의 공개시한, 공개 활동의 주체, 기록관의 기록물공개목록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물의 공개시한은 「당안법』, 당안법 실시관법』,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에 규정되어 있다. 「당안법』 제19조의 규정을 보면 “국가당안관에 보관된 당안은 일반적으로 형성된 이후 30년이 지나면 사회에 개방한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종류의 당안은 조기에 개방할 수 있으며, 외교, 치안, 국가 안전 등 국가의 중요한 이익에 관련된 당안은 생산된 후 50년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모든 당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비밀보장 혹은 사용의 통제가 필요할 경우 30년 이상으로 공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국가 당안행정관리 부문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에는 기록물의 공개시한 이외에도 각급 국가 기록관에 위탁된 기록물의 공개에 대하여 “각급 국가당안관에 위탁된 당안의 개방여부는 위탁자 혹은 그 합법적인 계승자가 결정한다. 그 합법적인 계승자가 없을 경우 그 기록물의 공개는 관련 기록관이 본 관법의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라고 위탁된 기록물의 공개권자를 따로 명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 근거하면, 중국의 기록물 공개시한은 기록물의 생산 후 30년이며, 기록물 공

개의 주체는 해당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각급 국가기록관이다. 국가기록관은 기록물을 집중 관리하는 문화사업기구를 말하며, 중앙, 성, 시, 현급 국가종합기록관과 각류의 전문기록관을 포함한다. 각 기관, 단체, 기업사업 조직 내부의 당안실과 당안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관은 포함하지 않는다(李薇 2005). 이런 까닭으로 중국의 기록물공개의 주체는 국가기록관이 된다. 단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는 국가비밀기관 및 관련 부문이 기록물 공개의 주체가 된다.

「당안법실시관법』에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전의 당안(청대와 청대 이전의 당안, 민국시기의 당안 및 혁명역사당안)은 이 관법이 실시되는 날부터 사회에 공개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생산된 당안은 생산된 후 만 30년부터 사회에 공개한다. (3)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유형의 당안은 수시로 사회 개방할 수 있다. 앞의 서술한 당안 중 국방, 외교, 치안, 국가안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당안과 기타 생산된 후 30년이 된 당안 중 당안관이 공개하기 여의치 않은 것은 당안행정관리부문⁷⁾의 비준을 얻어 사회에 공개하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각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공개시한을 명시하고 있다. 기록물의 공개 절차는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에 규정되어 있다.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의 제3조에 “각급 국가당안관은 개방시기가 된 모든 당안에 대하여 감정팀을 조직하고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무릇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비밀 보장과 사용 통제가 필요 없

7) 당안행정부문은 각급 당안국과 당안처를 칭하며 당과 국가에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당안업무부문.

는 당안은 당안관과 당안행정관리부문에 보고 하여 비준 후 개방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소속 행정기관에서 심의하여 비준한다.”라고 규정하여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공개는 각 기록물관리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며, 감정팀의 감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방법』은 또한 제 14조에 “각급 국가기록관이 매년 공개한 기록물의 목록 및 수량과 이용 후 생산된 중대한 효과 등의 상황을 본급과 상급 당안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공개 의무의 철저한 실시를 감독하고 있다.

2.2.2 중국의 기록물 공표제도

『당안법실시판법』에 따르면 기록물 공표는 각종 형식을 통하여 처음으로 사회에 기록물의 전부 혹은 부분적인 원문이나 기록물에 기재된 특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록물 공표는 일정한 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기록물의 존재, 형식, 내용과 소유권 등을 사회에 알리는 것을 이른다. 기록물의 공표는 기록물 공개와 함께 기록을 사회에 개방하여 기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성격은 차이가 있다. 기록물 공개는 기록물의 이용성을 이르는 말이고 공표는 기록물의 존재성을 이르는 말이다. 기록물의 공표권은 당안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기록물 공개의 공개권은 기록물의 관리자에게 있다. 기록물공표의 목적은 대중으로 하여금 기록물을 이해하고 기록물의 내용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나 기록물 공개의 목적은 대중의 기록물 이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공표된 기록물이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된 기록물이 반드시 공표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기록물관리에서 기록물공표 제도를 매우 중시하며, 각급 기록관의 기록물공표 권한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 『당안법』, 『당안법실시판법』,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방법』에 기록물의 공표권, 기록물공표 절차, 기록물공표의 방법과 기록물의 공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당안법』 제22조를 보면 “국가 소유의 당안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당안관 혹은 관련 기관에서 공표하고, 당안관 혹은 관련 기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공표할 권한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록관의 기록물의 공표가 기록관과 관련 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당안법실시판법』 제24조에서는 “단체 소유와 개인 소유의 당안은 당안의 소유권자가 공표권을 갖는다. 단 국가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손상을 가해서는 안 되며, 또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 소유의 기록물의 기록물공표 권한이 소유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방법』의 제13조에는 “각급 국가당안관은 상급 기관이 제작 발행한 문서 혹은 귀속 관리권이 본 당안관에 속하지 않은 역사기록물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상급 기관의 문서 공표는 문서를 제작 발행한 기관 소재 행정구역 당안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권이 본 당안관에 속하지 않은 역사당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당안의 관리권이 속한 당안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역사기록물의 공표권이 기록물의 관리기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은 소유자에 따라 서로 다른 공표절차를 갖는다. 우선 각급 국가 기록관에 보존 중인 기록물은 해당 기록관에 의해 공표된다. 단 필요에 따라 상급 주관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급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기록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 기록관에 위탁된 개인 소유 기록물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이 공표해야 한다.

『당안법실시판법』에 명시되어있는 공표의 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비디오, 전자 등 출판물을 통한 발표
- 전신, 방송 등을 통한 방송
- 컴퓨터 혹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전파
- 공개적인 장소에서 낭독 혹은 방송
- 기록물사료, 자료의 전문 혹은 적록모음 등의 출판 발행
- 공개적 판매 혹은 기록물 복제품 광고 및 배포
- 기록물 혹은 복제건의 전람 공개적 진열

『당안법실시판법』에는 또한 각급 국가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하고 공개기록물의 목록을 공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각급 국가당안관은 반드시 스스로 편찬하거나, 관련 단위와 합작하거나, 관련단위에 위탁하거나 혹은 개인 편찬 등의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기록물 사료의 편찬 출판업무를 전개하고 사회의 수요와 각종 기념활동을 기획하여 각종 형식으로 당안을 공표해야 한다.” 20조에는 “각급 국가당안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안은 반드시 당

안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하고 아울러 동시에 공개당안의 목록을 공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중국의 기록물 서비스 제도

중국의 기록물관리에서 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는 각 기록관의 중요한 업무이며 의무사항으로 각 기록관은 각각의 기록관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위주의 공개와 서비스가 진행을 책임진다.

기록물의 공개와 공표는 전국의 모든 기록관이 『당안법』과 『당안법실시판법』 및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업무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기록물의 서비스는 전국의 기록관이 모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위의 법률 및 기타 법규의 규정과 각 기록관이 위의 각 규정의 범위 안에서 현지의 상황에 맞추어 제정한 이용서비스규정의 이원적 서비스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당안법』과 『당안법실시판법』,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판법』에 규정된 전국의 기록관이 모두 준수해야 사항을 보면 기록관리자의 기록물 이용 서비스제공 의무, 기록물 서비스의 실시해야하는 기록관은 범위, 기록물 이용자의 신분 확인, 미공개 기록물과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의 이용, 기록물의 이용 제공 방법과 기록물 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책에 대한 규정 등이다.

우선 기록관리자의 기록물 이용 서비스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을 보면, 『당안법』 제19조는 “국가당안관이 보관하고 있는 당안의 이용을 위하여 조건을 창조하고 수속을 간소화하고 편

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과 조직은 합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공개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록물관리자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의 의무와 이용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당안법』은 현재 중국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에 대한 유일한 법률로서 총칙, 기록물관리기구 및 그 직책,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이용 직권과 공표, 법률 책임, 부칙 등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물 서비스의 실시해야하는 기록관은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면, 『당안법』과 『당안법실시판법』,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판법』 등의 법규는 국가종합기록관의 일반대중에 대한 기록물공개와 서비스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의 기록관들은 기록물 생산기관의 특수성이나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속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위에 서술한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고 각 기록관의 성질에 따라 별도의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갖는다. <국가당안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록관은 당과 국가의 중요한 기록을 보관하는 기지로 사회 각 층의 기록정보자원 이용의 중심이며, 기록관 업무는 기록사업의 주체이다. 2008년 10월 현재 중국에는 각급 각류의 3,816개의 기록관이 있다. 그 중 국가종합기록관이 3,046개, 국가전문기록관이 225개, 부문기록관이 142개, 기업기록관이 304개, 문화사업단위기록관이 40개이며 과학기술단위기록관은 59개이다. 국가종합기록관은 중앙급 기록관과 지방급 국가종합기록관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급기록관은 중앙기록관, 제1역사기록관과 제2역사기록관이 있다. 지방급 국가종합기록관은 성급, 직할

시, 자치구, 자치주와 각 지방의 시, 현, 구 등에 설립된 기록관이다. 현재 중국의 국가전문기록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진기록관이 있으며 특수한 형식이나 격식의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보관한다. 부문기록관은 외교부나 국방부 등 어떤 특정 기관의 기록관이다. 기업기록관과 문화사업단위기록관은 각 기업이나 문화사업단체 등의 기록관이다.

기록물 이용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규정으로는 『당안법실시판법』의 제22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조직은 소개서 혹은 업무증, 신분증 등 합법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이미 개방된 당안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혹은 외국 조직이 중국의 이미 개방된 당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관련 주관부문의 소개와 당안을 보존하고 있는 당안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자의 신분증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안법실시판법』에는 미공개 기록물과 아직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의 이용 신청, 기록물 이용 방법, 서비스 되는 기록물 매체에 대한 규정이 있다. 미공개 기록물의 이용 신청은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기록물관리 행정부문의 심의와 동의를 요구된다.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의 이용은 현재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조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록물의 이용 제공 방법에 관하여 『당안법』은 기록물의 이용을 “당안의 열람, 복제와 베끼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기록물 원건의 보호를 위하여 『당안법실시판법』 제21조에 “각급 각류 당안관은 사회에 이용을 제공하는

당안에 대하여 반드시 점차적으로 마이크로필름으로 원건을 대체해야 한다. 마이크로필름 당안과 기타 복제품 형식의 당안은 당안을 소장하고 있는 단위의 법정 대리인의 서명 혹은 인장 등의 표시가 있을 경우 당안 원건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기록물 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책에 대한 규정을 보면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방법』 제5조에 “각급 국가당안관은 반드시 개방된 당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이용자가 자력으로 검색할 있는 기록물철 혹은 문건 등급의 공개목록을 편찬하고, 파손 혹은 자적이 변했거나 번진 당안은 반드시 보수하여 보호하고, 오래되었거나 진귀하고 귀중한 당안은 반드시 복제품으로 원건을 대신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한다.”, 제6조에 “각급 국가당안관은 반드시 공개당안 열람실을 설치하고 아울러 필요한 열람과 복제 설비를 비치하여 이용자에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기록물의 물리적 접근 및 지적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당안법』과 『당안법실시판법』,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 기록관이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는 기록물 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책의 내용을 보면 기록물의 서비스 시간, 자료의 대출, 이용자의 등록과 확인, 개인소지품의 제한, 1회에 신청 및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수량 등으로, 각 사항의 구체적인 적용은 각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현지 상황에 의거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기록관의 기록물 서비스 시간, 기록물 이용료, 1회에 이용할 수 있는 기록물의 수량 등에 차이가 있다. 국가당안관인 제1역사기록관의 이용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본 기록관은 보관이용부의 이용과에서 기록물 이용 사무를 전담한다. 이용자는 반드시 효력이 있는 신분증과 소개서, 명확한 이용 목적을 가지고 접수처에서 수속을 마친 후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열람 가능 시간: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
3. 기록물 입출고 시간: 오전 8시와 오후 1시. 기록물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 시간 이전에 처리하여야한다(11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휴식시간).
4. 열람지역에는 메모리용 필기구 이외의 참고서, 사진기, 컴퓨터 등을 휴대할 수 없다.
5. 대여 기록물의 수량은 당일에 열람 가능한 수량으로 제한한다.
6.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원건의 파손으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기록물 및 기록물철 내의 문건의 수량을 정리할 수 없는 기록물은 열람이 제공되지 않는다.
7. 이미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품을 완성한 기록물은 원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마이크로필름복제품의 글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기록물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원건을 제공한다.
8. 기록물의 열람과 대여는 본 기록관이 규정한 지역 내로 제한한다.
9. 열람 과정에서 본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록물을 보호하며 기록물에 글씨를 쓰거나 접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열람 후에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10. 기록을 메모했을 경우 [당안 메모 기재표]에 기재하고 메모한 내용을 확인 받

은 후 가지고 간다.

11. 기록물을 사진 촬영하거나 마이크로필름의 현상은 반드시 [당안 촬영 기재표]에 기재하고 용도를 분명히 기재하고 본 기록관의 비준을 받아 제작을 절차를 정한다.
12. 본 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과 검색 도구는 복제할 수 없다.
13. 본 기록관에서 메모나 복제를 한 기록물은 「당안법」을 준수하여 본 기록관에서 서면으로 권한을 인가하지 않으며 공표나 출판을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본 기록관은 법적 책임을 묻는다.
14. 열람 보조 설비와 기타 설비를 보호하고 만약 손상시킨 경우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역사기록관이 기록물 이용절차에는 기록물서비스 부서, 기록물서비스 시간, 기록물의 서비스를 위한 입출고시간, 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제공 기록물의 매체와 이용제공 방법 및 이용자의 기록물 이용시 등록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기타 국가기록관은 각 기록관의 상황에 맞추어 이러한 상황 등을 포함한 이용정책을 제정하여 이용 서비스에 적용한다.

중국의 기록물 이용 수수료의 징수는 「당안법실시판법」,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 「당안 이용 수수료 규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지방의 상황에 맞추어 각 기록관이 제정하여 적용한다. 기록물의 이용 수수료 역시 국가가 정한 큰 틀 안에서 각 기록관이 현지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여 실시한다. 아래에 「당안

법실시판법」,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관법」, 「당안 이용 수수료 규정」에 나타난 규정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중국은 1988년부터 사회에 기록물을 공개하고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에 대한 제도는 기록물의 공개, 공표와 서비스의 제공까지 거시적 정책에서 미시적 정책까지 완성성 있는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물 공개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들이 종이기록물의 관리를 기준으로 공개와 서비스 제도를 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공개와 공표 방법이 없으며 온라인을 통한 기록정보의 서비스에 대한 규정들이 없다. 현재 중국 <국가당안국>은 전자기록물의 관리, 정보공개 요구의 증가와 기록물의 공개 역량 등의 강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당안법 수정 의견들을 수렴하여 「당안법」의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3. 중국의 기록물 웹 서비스 현황

3.1 중국의 기록물 웹서비스 현황

현재 중국의 기록정보웹서비스의 주요 방식은 각 기록물관리기관이 인터넷상에 건설한 기록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서비스이다. 기록정보네트워크는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이 인터넷상에 건립한 사이트로서 각종 기록관리업무를 실행하고 기록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이다. 1999년 이전에는 북경시기록관(<http://www.bjma.org.cn>)⁸⁾과 상해시기록관(<http://www>

8) 2007년 북경시기록관과 북경시당안국의 사이트 합병 후 <http://www.da.bj.cn>로 변경.

〈표 4〉 이용 수수료에 대한 정책

	반포일시	명 칭	내 용
1	1996-07-06	당안법실시판법	제22조 : 당안을 사회에 제공하여 이용할 때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표준은 국가당안국과 국무원의 가격관리부문에서 제정한다.
2	1991-12-26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방법	제9조: 각급 국가당안관이 이용을 제공할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항목을 증설하거나 수수료의 표준을 높여서는 안된다.
3	1987-10-05	국가당안국, 국가물가국의 당안 이용 수수료 관련규정에 관한 통지	1. 수수료 범위 ① 무료서비스: 해당 단위 혹은 개인이 형성 이관, 증여, 위탁한 당안과 상급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기록물 이용 ② 유료서비스: 부동산, 자산, 채무, 채권, 학력, 근무연한과 분쟁 해결, 생산 혹은 기타 영리성, 상업성 활동 및 출판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관과 개인의 기록물 이용은 모두 수수료를 징수한다. 2. 수수료 항목과 표준 ① 복제비: 수고비와 보호비를 포함한다 ② 증명비: 학력, 근무연한 및 공증 등을 위한 증명은 한 부당 2원, 부동산과 자산 증명은 경제수익의 2% ③ 자문서비스비: 직접적인 참고서비스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우편을 통한 대리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 3. 외국인의 이용 수수료는 표준보다 높게 징수할 수 있다. 4. 엄격하게 집행하여 임의로 항목을 증설하거나 표준보다 높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
4	1988-02-12	국가당안국의 당안이용료 관련규정에 관한 통지의 보충설명	1. 수수료 범위에 관한 무료 서비스 중의 "상급기관"을 주관 당안관의 직속 상급기관으로 규정한다. 무료서비스 중의 "개인"은 당안을 직접 생산하였거나 직접 이관, 증여와 위탁한 사람을 가르킨다(사망 후에는 계승자를 포함한다). 업무를 위한 이용도 복제비, 증명비, 자문서비스비를 징수한다. 2. 수수료 항목과 표준: "보호비"는 복제비용 재료비 이외의 것으로 진귀한 역사당안의 경우 높게 징수할 수 있다. 자료의 복제는 당안에 준한다. 외국인의 수수료는 내국인 보다 2-3배를 징수한다.
5	1992-04-22	당안 이용 수수료 규정	1. 대상과 원칙: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당안관은 각급 인민 정부가 설립을 비준한 종합성, 전문성 당안관이다. 유상서비스와 무상서비스의 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수료 범위: 국가당안관, 국가물가국의 당안이용 수수료와 관련한 규정의 통지와 같다.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은 모두 유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생산자, 소유자와 상급기관의 업무를 위한 이용은 무료서비스이다(복제비 원가는 징수한다). 3. 수수료 항목과 표준 ① 기록물 보호비: 일반기록물의 복사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명칭, 민국, 혁명역사, 건국 이후는 서로 다른 표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특별히 진귀한 당안은 일반 표준의 3-5배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복제비: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른다 ③ 증명비: 학력과 근무연한은 한 부당 2원, 부동산증명은 10-400원을 징수한다. ④ 자문서비스비: 각지방의 가격, 재정부분이 제정한다. ⑤ 외국인은 내국인 보다 2-5배를 징수한다.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공민은 외국인보다 낮게 징수한다. 4. 구체적인 수수료 징수의 실시는 각성급 물자, 재정부 부분이 제정한다.

w.archives.sh.cn) 두 개의 기록관사이트만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1999년부터 중국정부가 실시한 기록정보화 건설 촉진 사업의 영향으로 중국의 기록물 사이트의 수는 2005년도 연말까지 48개로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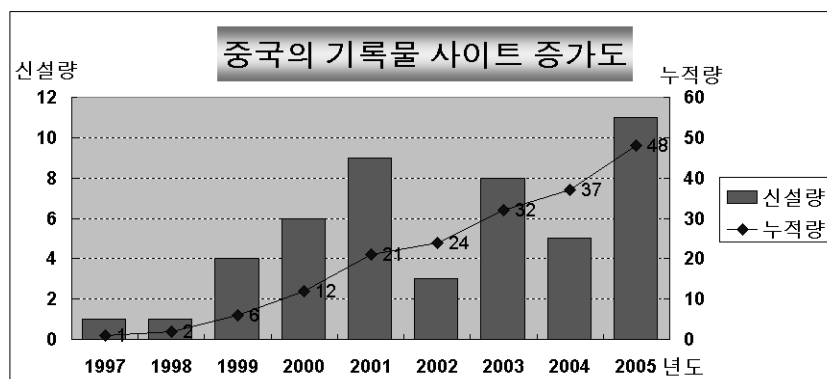
현재 중국에서 기록물 웹서비스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급 국가종합기록관이다. 지방급 국가종합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보면 2008년 현재 칭하이성(青海省)을 제외한 31개의 성급(직할시와 자치구 포함)기록관의 기록정보사이트가 개설되었으며, 인터넷에 부분적인 기록물 정보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어 중국 전국의 기록정보사이트 체계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기록관은 아직 웹사이트를 건설하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제1역사기록관과 제2역사기록관은 각각의 웹사이트를 건설하여 소장하고 있는 문건그룹목록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 상에서 기록물원문의 열람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제1역사기록관과 제2역사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열람을 원할 경우 반드시

기록관을 반드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중국의 대다수의 기록정보사이트의 이름은 gov.cn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요녕성기록관의 사이트명은 <http://www.lndangan.gov.cn>이고, 운남성기록관의 사이트명은 <http://www.ynda.yn.gov.cn>이다. 일부의 예외적인 기록정보사이트로는 상해기록관의 <http://www.archives.sh.cn>, 북경시기록관의 <http://www.dabj.cn> 등이다.

위에 언급한 31개의 성급 기록관의 대다수 기록정보사이트는 기록물목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원문서비스를 실시하는 기록관은 북경시기록관, 요녕성기록관과 운남성기록관이다. 요녕성기록관과 운남성기록관의 원문서비스는 특색기록물에 속하는 기록물의 일부 원문을 제공하고 기타 기록물의 원문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급 기록관 이외에 기록물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기록관으로는 청도시기록관(<http://www.qdda.gov.cn>)이 있다. 청도시기록관은 2000년부터 디지털기록관 건설을 시작하여 2003년에 완성하였다. 현재 청도시기록관은 기록물목록 데이



<그림 1> 중국의 기록물 사이트 증가도

터베이스, 원문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사진기록물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건설하여 기록물목록 및 원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기록물의 웹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이나 조항들이 없다. 『전국당안사업발전 10차 5개년 계획(全國檔案事業發展“十五”計劃)』⁹⁾ 중에 반포된 『전국당안정보화 건설 실시 요강(全國檔案信息化建設實施綱要)』은 기록물의 정보화 건설을 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조목으로는 기록정보자원의 개발, 기록물 목록센터의 건설과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북경, 천진, 요녕, 상해, 섬서, 청도기록관 등의 내부 네트워크의 완성과 각 기록관의 조건에 따라 공개기록물의 웹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현재 중국의 기록정보 사이트의 웹서비스는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각 기록관의 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웹서비스의 내용 또한 표준화된 바가 없어 기록물의 웹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내거나 각 기록관의 웹서비스 사이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웹서비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3.2 북경시기록관의 기록물 웹서비스

북경시기록관은 1995년 정보 네트워크화를 시작하여 1996년 수도 경제정보 네트워크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1998년 정식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소장기록물, 소장기록물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기록물자원의 개발과 이용 현황

등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고 있다. 2007년 북경시당안국과 북경시기록관은 두 개의 사이트를 하나로 합병하여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를 개설하여 기록물정보와 현행 정보의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는 시민의 편리한 기록정보 이용을 위하여 22개의 서버, 28개의 데이터베이스, 내부지역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와 웹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 설치하였으며 네트워크 연결과정에서 DmZ구역 즉 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기록물정보는 종이기록물을 디지털화한 정보로써 기록물의 정보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집(수집처) → 정리(정리처) → 보관(보관처) → 편목(편목처) → 마이크로필름화(마이크로필름처) → 디지털화(컴퓨터처) → 웹서비스 가능 여부의 감정(정리처의 감정위원회)을 거쳐 이용처에 의해 서비스가 실시된다.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는 기록물의 목록과 원문의 검색 기능과 온라인 정보서비스, 영문판 홈페이지서비스, 북경시 기타 기록정보사이트와 국내외 기록물관리기구와의 링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3.2.1 서비스 자원 유형과 수량

북경시기록관은 2005년 집계 기준으로 종이 기록물의 29.1%인 44.6만권 1,700만 페이지의 기록물의 디지털화하였으며, 소장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 기록물의 10%인 80여만 폭의 마이크로필름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으며, 소장하

9) 전국당안사업발전 10차 5개년 계획의 기간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임.

고 있는 전체 시청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다.

북경시기록정보사이트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정보의 유형은 기록물정보의 원문서비스, 기록물목록 정보서비스 및 기록물을 연구하여 편찬한 특색 기록물 등이 있다.

- 1) 기록물원문서비스: 북경시기록관은 이미 28개의 원문기록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완료하였다. 28개의 원문기록물정보 중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북평시정부 기록물, 북평시사회국 기록물, 북평시시민국 기록물, 북평시교육국 기록물, 북평시위생국 기록물, 기북전력유한공사북평분공사(冀北電力有限公司北平分公司) 기록물, 화북수리공정총국(華北水利工程總局) 기록물, 사진기록물의 8개 데이터베이스로 180만 페이지의 기록물이다. 위의 기록물은 모두 1949년 이전에 형성된 역사 기록물로 이미 공개기록물에 속한다. 기타의 원문기록물 데이터베이스는 정부기관의 공무원과 북경시기록관 직원에게 직급과 접근 권한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 2) 기록물목록정보: 북경시기록관은 6개의 목록 데이터베이스 건설하여 총 796,686개 조목의 목록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 6개의 목록데이터베이스는 중화민국시기의 기록물목록(447,711조목),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기록물목록 데이터베이스(73,390조목), 기록물자료 데이터베이스(22,647조목), 북경시 모범노동자 기록물목록 데이터베이스(40,290조목), 소송기록물목록 데이터베이스(104,477조목), 공상(工商)세무기록물목록 데이터베이스

(108,171조목)이다.

- 3) 특색기록물. 특색기록물은 북경시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기록물로 북경시기록관은 특색기록물을 주제별로 편찬 연구하여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특색기록물의 제작 방법은 임의의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기록물에 대한 설명, 외부학자의 연구와 사진 등으로 구성한다. 현재 북경시기록관이 제공하고 있는 특색기록물로는 경성강단(京城講壇), 도설북경(圖說北京), 고건민거(古建民居), 연도풍정(燕都風情), 경화지여(京華之旅), 고도창상(古都滄桑) 등이다. 각 주제 아래에는 각각 10여개의 소주제가 있다.

현재 북경시기록관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자원들은 대다수가 종이기록물을 디지털화한 정보로 멀티미디어 형식의 기록물은 온라인에서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구성된 28개의 원문기록물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을 8개의 데이터베이스로 제한하고 있어 온라인서비스 자원의 수량이 소수이다.

3.2.2 검색서비스

북경시기록관이 온라인상에서 기록물원문 혹은 기록물목록정보의 검색에 제공하는 검색 방법은 키워드검색과 목록형 검색방법이다.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은 사이트 내의 통합검색과 기록물원문데이터베이스 및 목록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이 제공된다. 통합검색은 범위는 홈페이지 내의 공개문건, 이용 가이드, 특색기록물

등으로 제한되어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기록물정보는 통합검색으로는 검색되지 않는다.

기록물원문과 기록물목록정보의 검색은 목록형 검색 방법과 키워드 검색 및 상세검색 방법이 결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기록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서비스를 링크하여 기록물목록정보와 기록물원문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 후 원하는 6개의 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와 8개의 원문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를 선택하면 키워드 검색과 상세검색의 창이 나타난다. 상세검색의 창은 기록물 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일시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기록물목록과 기록물원문을 검색할 경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은 검색 범위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검색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선택하여 검색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3.3.3 기록물의 접근

북경시기록관은 온라인으로 기록물원문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대다수 기록관의 사이트가 기록물목록정보의 서비스나 간단한 소개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북경시기록관은 온라인으로 원문기록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기록정보사이트이다. 이용자는 각종 검색 방법으로 목록기록정보와 원문기록정보를 찾아내어 열람할 수 있다. 원

문기록은 Tif형식으로 저장되었으며 전문 뷰어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인쇄나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3.3.4 도움말과 웹서핑서비스

북경시기록관이 제공하는 이용자를 위한 도움말과 웹서핑서비스는 이용가이드, 홈페이지 웹서핑가이드 등의 설명형 도움말서비스와 이용자와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FAQ와Q&A 등의 서비스가 있다. 설명형 도움말서비스는 소장 기록물 소개, 기록관 이용소개, 온라인 서비스 소개, 기록물 이용 예약서비스 소개 등이 있다. 설명형 도움말서비스는 모두 문자형 설명으로 대다수의 내용은 오프라인 서비스 즉 기록관을 직접 방문하여 얻을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설명이다.

북경시기록관의 Q&A서비스는 “我要提言”으로 전자우편 방식으로 이용자가 관리자에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이용 기록은 저장되지 않으며, 질문된 내용의 처리 현황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3.3.5 이용자 관리

북경시기록관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일반 이용자의 로그인 제도가 없다. 즉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한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자에 대한 기타 관리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기록정보를 원할 때 직접 본인이 원하는 정보로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 내력 혹은 관심 기록 등의 관리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 예약 열람 서비스 혹은 자문서비스를 구할 수는 있으나

블로그, 위키, RSS와 전자저널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기록정보에 대한 온라인을 통한 평등한 접근, 수량의 확대, 사회이용자와 기관이용자의 차별 타파, 데이터베이스의 다각화를 통해 검색의 필요성 도모, 이용자관리를 위한 개성화서비스, 서비스 내용과 절차의 투명화 등 이용자 지향적인 서비스 메카니즘의 건설이 요구된다.

4. 결론

기록물의 공개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5,60년대의 모든 국가기록물에 대해 이용자군을 제한한 공개 및 서비스에서 1980년대의 역사기록물에 한정하여 특정 이용자군에게 공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쳐 1987년 5월 제정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당안법』의 시행으로 1949년 이후에 생산된 국가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가 일반이용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기록물의 공개와 공표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보면 중국의 국가기록물의 공개는 기본적으로 생산 30년이 지나면 각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물 관리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사회에 개방된다. 공개가 결정된 국가 소유의 기록물과 개인이 위탁이 국가기록관에 위탁하여 국가기록관에 보관 중인 기록물은 각급 기록관에 의해 사회에 공표되고, 개인 소유의 기록물은 개인에 의해 공표됨으로써 기록물의 존재, 형식, 내용과 소유권 등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다. 중국은 기록물의 공개와 더불어 기록물의 공표를 중요한 기록물관리 정책 삼고 있으며, 국가기

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하고 공개기록물의 목록을 공표할 의무를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

기록물의 서비스는 『당안법』과 『당안법실시판법』, 『각급 국가당안관의 당안개방 판법』에 규정된 이용정책에 의거하여 각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기록관마다 실천적인 서비스정책에는 약간의 차이를 갖는다. 전국의 기록관이 모두 준수해야 사항으로는 기록관리자의 기록물 이용 서비스제공 의무, 기록물 서비스의 실시해야하는 기록관은 범위, 기록물 이용자의 신분 확인, 미공개 기록물과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의 이용, 기록물의 이용 제공 방법과 기록물 이용정책에 대한 규정 등이다. 각 기록관이 제정할 수 있는 기록물 이용의 편리를 위한 정책의 내용은 기록물의 서비스 시간, 자료의 대출, 이용자의 등록과 확인, 개인소지품의 제한, 기록물 이용료, 1회에 신청 및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수량 등으로 각 사항의 구체적인 적용은 각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현지 상황에 의거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기록물 웹서비스는 각급 기록관이 건설한 기록정보웹사이트에 의해 실시된다. 현재 중국의 국가중앙기록관 중 중앙기록관은 인터넷 사이트를 건설하지 않았으며 제1역사기록관과 제2역사기록관은 문건그룹목록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청해성을 제외한 31개의 성급(직할시와 자치구 포함) 기록관은 모두 기록관 사이트를 건설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기록물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록관은 북경시기록관, 요녕성기록관과 운남성기록관이다. 성급 기록관 이외에

청도시기록관이 인터넷을 통해 기록물원문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중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은 종이기록물, 마이크로필름기록물의 이용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웹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웹을 통한 기록물 서비스는 「전국당안사업발전 10차 5개년 계획」 중에 반포된 「전국당안정보화 건설 실시 요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위의 요강은 각 기록관리기관의 내부 지역네트워크 건설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웹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는 장려 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의 기록물 웹서비스는 각 기록관의 자율적인

업무 사항으로 각 기록관의 웹서비스의 편차가 크고 웹서비스 기록물의 수량이 기록물의 목록 정보에 그치는 기록관이 대다수이다.

북경시기록관사이트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록물 웹서비스 사이트로 현재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목록서비스 및 기록물원문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의 수량이 소량이며 기록물의 온라인 열람 이외에 인쇄나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함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기록물 이용 상황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의 기록물 이용 현황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참 고 문 헌

國家檔案局辦公室. 1986. 『檔案工作文件匯集(一)』. 北京: 檔案出版社.

國家檔案局辦公室. 1986. 『檔案工作文件匯集(二)』. 北京: 檔案出版社.

國家檔案局辦公室. 1992. 『檔案工作文件匯集(三)』. 北京: 檔案出版社.

國家檔案局辦公室. 1992. 『檔案工作文件匯集(四)』. 北京: 檔案出版社.

國家檔案局, 中央檔案館辦公室. 1997. 『檔案工作文件匯集(五)』. 北京: 檔案出版社.

國家檔案局, 中央檔案館辦公室. 1997. 『檔案工作文件匯集(六)』. 北京: 檔案出版社.

國家檔案局辦公室. 1999. 『檔案工作文件匯集(七)』. 北京: 檔案出版社.

國家檔案局辦公室. 2003. 『檔案工作文件匯集(八)』. 北京: 檔案出版社.

메리 조 푸우. 2004. 『기록정보서비스』. 설문원 역. 서울: 진리탐구.

楊飛, 陳東宝. 2006. “網絡化環境中檔案信息利用途徑探討.” 浙江檔案, 4: 31.

吳文革, 馬仁杰. 2004. “論檔案開放的原則.” 檔案學通訊, 4: 73-75.

王改嬌. 2005. ““檔案開放”語詞溯源.” 山西檔案, 5: 16-19.

劉麗佳. 2007. “網絡時代檔案信息服務的特點和對策.” 黑龍江檔案, 5: 40.

李薇. 2005. “檔案開放法律制度探微.” 行政与法律, 4: 57-59.

李福君, 張弘. 2008. “論檔案网站的信息資源建設與服務.” 蘭台世界, 7: 5-7.

李揚新. 2006. “信息公開視角中現有檔案開放制度的剖析.” 浙江檔案, 9: 10-13.

張世林. 2004. 『檔案信息利用法律研究』. 三河: 中國法制出版社.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查檔須知.” [cited 2008.11.3].

〈<http://www.lsdag.com/doccdxz.asp>〉.

中華人民共和國國家檔案局. “全國檔案館工作概況.” [cited 2008.10.28].

〈http://www.saac.gov.cn/articleaction.do?method=view&id=ff80808117313bf90117331ae40f0_008〉.

陳永生. 2007. “檔案開放的改進思路——

檔案開放若干問題研究之四.” 浙江檔案, 9: 13-16.

馮惠玲, 張輯哲. 2001. 『檔案學概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관련법령〉

『各級國家檔案館開放檔案辦法』.

『利用檔案收費規定』.

『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

『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實施辦法』.

〈참고사이트〉

북경시기록관홈페이지.

〈<http://www.da.bj.cn>〉.

청도시기록관홈페이지.

〈<http://www.qdda.gov.cn>〉.